

제335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16. 7. 11 ~ 7. 22)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 335회 임시회

(2016. 7. 11 ~ 7. 22)

목 차

제 335회 임시회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2. 회기 및 운영
3. 의 사 일 정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3. 위원회별 처리현황
4. 주요 처리사례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I .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6. 7. 5(화)
- 집회 일자 : 2016. 7. 11(월) 14:00
- 집회 사유
 - 2016년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
 -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6. 7. 11 ~ 7. 21(12일간, 2016년 : 78일, 총누계 357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2(연누계 : 21, 총 누계 67)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34회 임사회	26	3	7	4	4	5	3	-
2016 년도	97	10	23	16	16	16	16	
총 누 계	608	44	128	84	94	106	116	36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고
2016 7.11(월)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1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현 의원, 최영일 의원, 최진호 의원, 양용모 의원, 박재만 의원, 이현숙 의원, 허남주 의원 1.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2016. 7.22(금)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2차 본회의 》</p>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 영 위 원 회	7. 11(월) 10:00	1	○ 일반안전 심사 - 제3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령정 협의 결정의 건	
	7. 12(월) 10:00	2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의회사무처	
	7. 22(금) 11:00	3	○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행정자치 위 원 회	7. 13(수) 10:00	1	○ 행정자치위원회 하반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기획관리실, 전북연구원	
	7. 14(목) 08:30	2	○ 전라북도의회 유학생 유치지원 연구회 현지활동(부산 국제 교류재단)	
	7. 15(금)	3	○ 전라북도의회 유학생 유치지원 연구회 현지활동(부산 국제 교류재단)	
	7. 18(월) 10:00	4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자치행정국 ○ 의안심사 -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북인재육성재단, 공보관	
	7. 19(화) 10:00	5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대외협력국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자원봉사센터, 국제교류센터	

	7. 20(수) 10:0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소상공인 ○ 의안심사 -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7. 21(목) 10:0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활동 - 119 안전체험관(임실) 	
환경복지 위원회	7. 12(화) 14: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환경녹지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7. 13(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새만금추진지원단, 복지여성보건국 ○ 의안심사 -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지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군산의료원 	
	7. 14(목)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활동 -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남원의료원 업무보고 - 남원노인요양병원 	
	7. 15(금)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활동 - 부안 “종합사회복지관” 	
산업경제 위원회	7. 13(수)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대 하반기 산경위 부위원장 선임의 건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전북신용보증재단 	
	7. 14(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경제산업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동차기술원 	

	7. 15(금)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농축수산물식품국 ○ 의안심사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18(월) 14: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활동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 완주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7. 12(화) 14: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하반기 부위원장 선임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도민안전실 소관 	
	7. 14(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문화체육관광국 - 전라북도 체육회,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15(금)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 전라북도 문학관 	
	7. 18(월)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건설교통국 -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7. 19(화) 1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활동 - 전주한옥마을, 섬진강댐물문학관, 필봉농악전수관 	
교육 위원회	7. 12(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라북도교육청 	

	7. 13(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교육지원청 -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 교육지원청 	
	7. 14(목)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 전북 군산·마한·남원·김제·부안 교육문화회관 ○ 의안심사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35회 (2016. 7. 22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18	11	37	7	1					5	2	
	누 계	780	464	194	270	10	10	1	151		27	92	35
의 회	소계	금회	11	4	2	2						5	2
		누계	415	274	165	109		10	1	5		92	33
	의원	금회	11	4	2	2						5	2
		누계	377	274	165	109		9		3		79	12
	위원회	금회											
		누계	38					1	1	2		12	21
	도지사	금 회	6	6	1	4	1						
		누 계	264	143	24	112	7			106		14	1
교육감	금 회	1	1		1								
	누 계	101	47	4	40	3			40		13	1	

2. 처리현황

○ 총 괄

제335회 (2016. 7. 22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18	17	11	4		1		1	1	
	누계	780	762	636	106		13		7	18	
조 례 안	소계	금회	11	10	5	4				1	1
		누계	464	448	354	86		2		4	17
	의회	금회	4	4	2	1				1	
		누계	274	260	204	48				4	14
	도지사	금회	6	6	3	3					
		누계	143	142	106	34		1		1	1
교육감	금회	1								1	
	누계	47	45	40	4		1			2	
규 칙 안	금회										
	누계	10	10	10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누계	151	149	134	6		8		2	1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누계	27	27	12	13		2				
건의결의안	금회	5	5	4			1				
	누계	92	92	90	1		1				
기 타 의 안	금회	2	2	2							
	누계	35	35	35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 회	12	11					1		11	5	4	1	1	1	
	누 계	664	462	10	1	47		27	14	4	647	521	106	14	6	18
운 영 위 원 회	금 회	1						1		1			1			
	누 계	40		10	1			3		39	37	1	1		1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금 회	4	4							4	2	2				
	누 계	132	107			22		2	1	131	112	18				
환 경 보 지 위 원 회	금 회	2	2							2		2				
	누 계	101	89			10		2		98		18				
산 업 경 제 위 원 회	금 회	2	2							2	1			1		
	누 계	96	53			40		3		93	46	10	6	1	2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금 회	1	1							1	1					
	누 계	117	78			35		4		113	94	19			4	
교 육 위 원 회	금 회	2	2							1	1				1	
	누 계	150	108			40		1	1	143	121	17	2	3	7	
특 별 위 원 회	금 회															
	누 계	28						16	1	1	28	14	12	2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6						4	2	6	6					
	누계	116	1			5		80	30	116	113	2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18	11					5	2	17	11	4	1	1	1	
	누계	780	464	10	1	151		27	62	35	762	636	106	1	2	18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기관 및 의안별 <접수>

제335회 (2016. 7. 22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780	464	194	270	10	10	1	151		27	92	35
의 회	소 계	415	274	165	109		10	1	5		92	33
	의 원	377	274	165	109		9		3		79	12
	위 원 회	38					1	1	2		12	21
전라북도지사	264	143	24	112	7			106		14		1
전라북도교육감	101	47	4	40	3			40		13		1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35회 (2016. 7. 22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780	762	636	106		13		7	18	
조 례 안	소 계	464	448	354	86		2		4	17
	의 회	274	260	204	48				4	14
	도 지 사	143	142	106	34		1		1	1
	교 육 감	47	45	40	4		1			2
규 칙 안	10	10	10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151	149	134	6		8		2	1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27	27	12	13		2				
건 의 결 의 안	92	92	90	1		1				
기 타 의 안	35	35	35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7. 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7. 5
	의 결 일 자	2016. 7. 19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7. 22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범위)
- 다.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 라. 세계인의 날, 포상 및 명예도민

<수 정 안>

원 안	수 정 안
<p><신 설></p>	<p>부 칙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및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p>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7. 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7. 5
	의 결 일 자	2016. 7. 13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7. 22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동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위함

□ 주요내용

-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름(안 제2 제1호)
- 나.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강제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안 제4조제3항)
- 다.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전라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1항)
- 라.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기관 간 동일직급 위원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수 정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 ----- ----- ----- -----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7. 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7. 5
	의 결 일 자	2016. 7. 1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7.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행사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사)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2014. 1. 6.)
- 2015. 1. 1.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조례를 근거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 (사)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의 목적사업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업무를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으로 이관완료(2016.2.29.)함에 따라, 관련 조례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7. 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7. 5
	의 결 일 자	2016. 7. 20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7. 22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6.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산림 또는 논·밭두렁 주변에서의 소각행위 등 부주의로부터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사전 신고지역 및 장소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의 안전에 기여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사전 신고지역에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을 추가 함 (안 제3조)
- 나. 화재예방조례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 예고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2호 서식)

<수 정 안>

원 안	수 정 안
<p><신 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5조(홍보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해 2년마다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의안번호 764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7. 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7.5
	의 결 일 자	2016. 7.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7.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행정규칙 서식 정비

주요내용

-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행정규칙 서식 정비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6. 7. 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 화 건 설 안 전 위 원 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6. 7. 1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7. 22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6.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사업」 전면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이용권 소지자에 대한 사격장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사용료에 「전북관광패스라인 사업 이용권 소지자」 추가 및 실내사격장 전자표적 교체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안 제8조 관련 별표1)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송성환 의원 외 14인		제 출 일 자	2016. 7. 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7. 5
	의 결 일 자	2016.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7.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관련기관’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위원을 재위촉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자주발생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당연직 위원을 행정부지사, 자치안전국장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국장, 전라북도교육청·전라북도지방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책임자로 개정(안 제6조3항)
- 나. 위촉직 위원중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삭제(안 제6조3항1호)

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최영규 의원 외 13인	제 출 일 자	2016. 7. 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6. 7. 1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7. 22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6.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가 초고령 사회로 급속히 변천함에 따라 전라북도 내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또 하나의 현대사회 병폐로 떠오르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 보장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부문을 활용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 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 이에 전라북도 내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갖춘 민간자원의 활용을 독려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 간의 체계적인 구성과 효과적인 활용을 모색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이 도민인 독거노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정하고, “재능 기부”의 용어를 정의함
- 나. 도지사의 책무와 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영하는 시·군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라.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수 정 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 운용 시·군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제5조(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 운용 시·군에 대한 지원) ① ----- ----- ----- ----- ----- -----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 -----
② (생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호영·이해숙·허남주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6. 7. 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7. 5
	의 결 일 자	2016. 7.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7.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7.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별표2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산업서비스」와 「컴퓨터」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며,
- 원활한 학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실습실 면적을 축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업서비스」 29.전산회계 [별표2]

- 실습실 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45제곱미터로 축소
-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항목을 삭제

나. 컴퓨터」 42.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인터넷·컴퓨터·게임·로봇·정보처리·통신기기 [별표2]

- 실습실 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45제곱미터로 축소
- 「32Bit 이상 퍼스널 컴퓨터 : 일시수용인원 1인당 1 대 이상」 항목을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으로 수정
-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20개 이상 항목 삭제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이해숙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6. 7. 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7. 5
	의 결 일 자	2016. 7. 19	심 사 결 과	철 회
본회의 심의	회 차			
	의 결 일 자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북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원을 통한 민주적인 주민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 나. 지사는 시민의 미디어교육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 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음
- 라. 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산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출 자	양용모 의원 외 13인		제 출 일 자	2016. 7. 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운 영 위 원 회	회 부 일 자	2016. 7. 5
	의 결 일 자	2016. 7. 22	심 사 결 과	부 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의 결 일 자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 당시부터 제기된 LH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달래기 용이라는 투자 협약 관련 의혹을 해소 하고자함.

□ 주요내용

- 가. 가. 대 상 기 관 : 전라북도
- 나. 사무의 범위 :
 - 1) 2011년 4월 체결한 삼성의 새만금 투자 협약
 - 2) 새만금사업 착공 이후 체결된 새만금 관련 투자협약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임의 건

제 출 자	의장		제 출 일 자	2016. 7.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7. 1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임위원 가나다순)

추 천 의 원			비 고
소속위원회		성 명	
연번	계	11명	
1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2	행정자치위원회	최인정	
3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4	환경복지위원회	이성일	
5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6	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7	산업경제위원회	정진세	
8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상현	
9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10	교육위원회	양용모	
11	교육위원회	최영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출 자	의 장		제 출 일 자	2016. 7.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7. 11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임위원 가나다순)

추 천 의 원			비 고
소속위원회		성 명	
연번	계	9명	
1	행정자치위원회	최인정	
2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3	환경복지위원회	이도영	
4	환경복지위원회	이호근	
5	산업경제위원회	박재만	
6	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7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성빈	
8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상현	
9	교육위원회	강병진	

2017년도 국책사업 전라북도 지방비 매칭 중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송성환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7. 2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7.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7. 25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현재 2017년 국가예산이 한창 기재부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심의동향을 보면 전북도의 주요현안 사업들이 기재부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줄줄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음
-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예타통과시('14.11월, 998억원 전액국비 사업) 국립화로 추진 결정한 사업을, 지자체가 시설을 건립·운영토록 하는 공립화(사업비의 5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 부담을 요구)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북 영주 산림치유원은 시설 조성(1,413억)과 운영비(160억) 전액을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비교시 지역차별이 도를 넘는 것으로 생각되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새만금 지역 국가별 경험특구 조성사업 등 또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며 예산요구액 전액이 미 반영된 상태임
- 이에, 국가사업 추진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 억지스런 지방부 부담요구 및 타 지역과의 지역 차별성을 거둘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박근혜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기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억지스런 ‘지방비 부담 요구 및 지역차별’ 을 중단하라.
- 나. 박근혜 정부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사업에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정을 투입하라.
- 다. 박근혜 정부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선정을 경제적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고려하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양용호 의원 외 20인		제 출 일 자	2016. 7. 2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7.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7. 25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난 7월 1일 현대중공업 비상경영 대책설명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은 채권은행 자구계획안으로 울산 4, 5 도크 및 군산 도크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
- 구조조정이 진행된 군산조선소는 물량부족의 임시방편으로 사외협력사 물량을 사내협력사로 배정하면서 사외협력업체 직원 500여명이 이미 실직했고 하청업체 4곳이 폐쇄된 상황이며, 향후 선박건조대마저 폐쇄된다면, 직영 700여명, 사내 협력업체 40개사 3,100여명, 사외협력업체 42개사 1,300여명 등 총 5,100여명에 이르는 숙련된 기술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함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연간 2,000억 원 가량의 인건비 지급과 3,000억 원의 지역협력업체 거래실적 등 약 2조 2,000억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를 지역에 가져다 줄 정도로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막대하기를 데 없는 대표적인 지역의 효자 기업임
-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2010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건립 이래 전북 도민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군산조선소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군산조선소의 도크 폐쇄는 전북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지대한 바, 정부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계획조선의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
- 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6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할 경우 5천여 명의 실직과 82개사 협력업체들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해운회사에 대한 지원을 단행하여 수주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근로자의 고용, 복지, 금융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농민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 저지 결의안

제 출 자	이현숙국주영은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6. 7. 2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7.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7. 25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LG CNS는 새만금 산단 1공구 76.2ha에 2022년까지 3,800억원을 들여 ‘스마트 바이오파크’를 조성하고, 이중 50ha에서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생산할 계획을 발표해 국내 시설원예농가를 붕괴시키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농식품부는 대기업의 농업진출에 우리 농업이 붕괴될 것이 뻔히 보임에도 LG의 대농민 설명회가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등 대기업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정부와 여당에서는 ‘기업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해 9월 이전에 처리하기로 하여 LG의 농업진출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의회는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LG의 새만금 농업 진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대기업을 옹호하는 정부의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제 출 자	의 장		제 출 일 자	2016. 7. 2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6. 7. 22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6. 7. 25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제35조
-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대표의원 요청

주요내용

대상의원	소속 상임위		요청사유
	현 재	변 경	
최인정	운 영 위 원 회	-	국민의당 효 율 성
박재완	-	운 영 위 원 회	
이도영	환 경 복 지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본 인 희 망
최인정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본 인 희 망
강영수	교 육 위 원 회	문 화 건 설 안 전 위 원 회	본 인 희 망
박재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환 경 복 지 위 원 회	본 인 희 망

